

< 2025-1학기 등록금 반환 및 초과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>

① 등록금 반환

1. 학칙 제65조(등록금의 반환)

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육부령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(등록금의 반환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2. 등록금 반환기준

- 가.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- 나.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- 다.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차감된 금액(실납부금액)을 반환기준에 적용한다.
- 라. 등록 후 휴학한 자의 경우에는 학칙 시행규칙 제2조 7항의 적용을 받는다.
- 마. 이미 납부한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고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한다.(학칙 제63조)

* 기준 : 2025.03.04. 개강일

* 개정 : 1997년 2학기 최초시행, 2004년 2학기 1차개정, 2007.3.31 2차개정, 2010.12.02 3차개정

사 유 발 생 일	2025.1학기 등록자 반환 산정일	반 환 금 액	비 고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	2025.04.02. 까지	등록금의 5/6 해당액	반환시 십원 미만 절사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2025.05.02. 까지	등록금의 2/3 해당액	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2025.06.01. 까지	등록금의 1/2 해당액	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	2025.06.02. 부터	반환하지 아니함	

3. 등록금 반환 제외자 : 1)1997년 2학기 이전 자퇴자 2)제적자(휴학경과제적자 : 3차 개정 이후자만 반환)

4. 2의 가항의 개시일 전일은 2011년부터 적용한다(2010년 이전은 개시일까지 적용받는다).

① 초과학기(졸업부결) 등록금 납부

1. 학부 : 졸업학기(일반 8학기, 의치한 12학기, 건축학과 10학기) 이후 졸업학점 미달로 재수강(재입학자, 복수전공자 포함)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학 점	수 업 료	비 고
1학점부터 3학점까지	등록금의 1/6 해당액	
4학점부터 6학점까지	등록금의 1/3 해당액	
7학점부터 9학점까지	등록금의 1/2 해당액	
10학점 이상	등록금의 전액	

* 졸업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/졸업시험/수강학점이 0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연기된 자는 등록금의 전액을 면제한다. 다만, 수강학점이 0이 아닌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2. 대학원 : 졸업학기 이후 졸업학점 미달로 재수강(재입학자 포함)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학 점	수 업 료	비 고
1학점부터 3학점까지	등록금의 1/2 해당액	
4학점부터	등록금의 전액	

① 학부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납부

학사학위취득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적만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, 학점취득을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과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